

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제안이유

- 상·하수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·하수도사업소의 신설에 따라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있어 사회산업위원회에 상·하수도사업소를 추가하고자 함. (안 제3조제2항제3호)

참고사항

-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

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서 상·하수도사업소를 사회산업위원회에 삽입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